
서울교통공사정관 개정(안) 보고

2021. 3.

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(안)

『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, 『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』, 『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』 개정사항을 서울교통공사 정관에 반영하고자 함.

1 관련근거

- 「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정관) 제2항
- 제2021-1회 이사회(임사회) 서면결의 (2021.1.29.)
 -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정관(안) 원안의결

2 주요내용

- 공사 수권자본금 25조원으로 상향조정
 - 공사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자예정액 고려하여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21조5,000억에서 25조원으로 확대 반영

『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일부개정조례 (‘21.1.7.)
제4조1항 중 “21조5,000억원”을 “25조원” 으로 한다.

- 임원추천위원회 세부사항 변경시, 시장 인가 및 시의회 사전보고 의무화
 -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, 시장의 인가 전에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관에 반영

『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일부개정조례 (‘21.1.7.)
제8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.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“노동이사”로 용어 정비

- “노동자이사” 용어를 “노동이사”로 수정하여 정관에 반영

『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』 일부개정조례 (‘20.7.16.)
제1조 및 제14조 중 “노동자이사제”를 각각 “노동이사제”로 하고,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“노동자이사”를 각각 “노동이사”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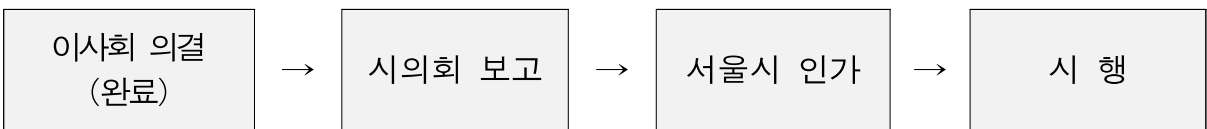
□ 모든 이사에게 “안전 제출권”, “정보 열람권” 권한 부여

- 노동이사를 포함한 공사 이사에게 이사회 안전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과 안전과 관련된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관에 명시

『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』
제9조(권한) ① 노동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『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』 일부개정 (‘20.7.16.)
“이사회 안전 제출권”, “정보 열람권” 정관에 반영토록 명시

3 행정사항

□ 개정절차



- 붙 임 : 1.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(안) 신·구대비표 1부.
2. 제2021-1회 이사회 서면결의서 1부. 끝.

【붙임1】

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(안) 신·구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비 고 |
|---|--|--|
| <p>제4조(자본금)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1조 5천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4조(자본금)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 수권자본금 상향 반영 |
| <p>제11조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 1인과 10인 이내의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및 노동자이사 각 2명 포함) 및 감사 1인을 둔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 | <p>제11조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 1인과 10인 이내의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및 노동이사 각 2명 포함) 및 감사 1인을 둔다.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 | 용어정비 |
| <p>제12조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| <p>제12조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| 용어정비 |
| <p>제14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~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 <p>③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.</p> <p>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| <p>제14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.</p> <p>⑤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| 임원추천 위원회 세부사항 변경시, 시의회 사전보고 반영 |

| 현행 | 개정안 | 비고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임원인 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.</p> <p>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.</p> | <p>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임원인 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.</p> <p>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.</p> | |
| <p>제15조(임원의 직무) ①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설 ></p> <p>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</p> <p>③ 이사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,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</p> | <p>제15조(임원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안건과 관련된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</p> <p>④ 이사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,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⑤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</p> | <p>안건제출권 및 정보열람권 권한부여 반영</p> |
| <p>제17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자(노동자이사만 해당)</p> <p>②~③ (생략)</p> | <p>제17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자(노동이사만 해당)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| <p>용어정비</p> |
| <p>제22조(임·직원의 보수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| <p>제22조(임·직원의 보수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| <p>용어정비</p> |

제2021-1회 이사회 서면결의서

○ 부의안건 : 제2호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(안)

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(의결방법의 특례)에 의거하여 위 안건에 대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“원안의결” 하고자 하니 아래에 찬성여부를 표기(○)한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월 29일

서울교통공사이사회 의장

| | 성 명 (서명) | 찬 성 | 반 대 | 비 고 |
|----|---|-----|-----|-----|
| 의장 | 나상윤  | ○ | | |
| 사장 | 김상범  | ○ | | |
| 이사 | 오재강  | ○ | | |
| 이사 | 안상덕  | ○ | | |
| 이사 | 심재창  | ○ | | |
| 이사 | 권영빈  | ○ | | |
| 이사 | 이진선  | ○ | | |
| 이사 | 김경엽  | ○ | | |
| 이사 | 김경욱  | ○ | | |
| 이사 | 김설주  | ○ | | |
| 이사 | 이재복  | ○ | | |
| 이사 | 최재형  | ○ | | |
| 이사 | 김태명  | ○ | | |
| 이사 | 여장권  | ○ | | |

간 사


위 결의를 확인함.

감 사 안연환 